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세법령 개정사항의 보완과 현행조례 중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관련 법령 적용에 불합리한 규정의 명확성 제고와 적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 부동산 취득으로 취득세 신고납부 시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자료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로 직권등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부과·징수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납세자의 과세자료 재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포탈된 징수금의 과징”을 “탈루된 징수의 처리”로 함(안 제15조)
- 공시송달을 일간신문·구보·게시판 및 서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4일이 경과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함(안 제17조)
- 신고의무 규정에 따라 “다만, 광주광역시세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의 단서신설(안 제31조·제32조·제42조제7항·제50조제2항)
-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사항 신설(안 제31조의2)
- 재산할의 납기를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함(안 제49조)

3. 검토의견

이번 개정안은 현행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를 지방세법령의 개정 및 조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안이라 생각합니다.

안 제7조제2항은 “제37조의 서식”을 “제37조에서 규정한 서식”으로 “60일 이내에”를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로 개정함으로써 해석상의 애매함을 해소하고 신고수리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라 판단합니다.

안 제14조는 “구세에 관하여”를 “구세를”로 개정하여 징수유예 등의 대상세목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 제15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례 제15조에서는 포탈된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포탈된 구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 적용해야 할 세율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 규정형식이 지방세법령과 달라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탈루라 함은 있어야 할 것이 빠지고 새어 나가는 것을 말하고, 포탈이라 함은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고 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징수금이라 함은 세금이나 벌금 따위를 (이미) 거두어들인 금액이라고 본다면, 개정안 중 “누락·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탈루된 징수금”을 지방세법 제85조의 규정처럼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구세”로 하고, “당해 금액”을 “그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조문의 제목도 “탈루된 징수금의 과징”으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85조 (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지방세는 그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본조신설 97·8·30]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개정안	수정의견
<u>제15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탈루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u>	<u>제15조(탈루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구세는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그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u>

안 제17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개정된 지방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송달기한을 명시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안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세법
제52조 (공시송달) ①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62·12·29, 78·12·6, 81·12·31, 99·12·28, 2001·12·29> 1.~ 4(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신설 62·12·29, 78·12·6>

안 제18조제2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의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를 그 근거로 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에 관한 근거법령이 동법시행령 제124조제1항으로 바뀜에 따라 관련조문의 인용법령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3조제4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례 제23조제4항 중 “과세대상물건”은 “과세대상물건”이 잘못 표기된 것이고, 이에 따라 개정안은 용어표기상의 오기를 바로 잡자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 제26조제1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1호는 조례의 입법형식에 맞게 "제1목 내지 제4목"을 "가목 내지 라목"으로 하자는 것이고, 신설된 안 제2호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제1목 및 제2목에 규정된 선박의 재산세 세율이 현행조례에 누락되어 있어 지방세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선박의 재산세 세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안 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안 동호 나목 중 “제1목”은 조례의 입법형식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현행조례의 규정형식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의 규정형식을 그대로 옮겨 쓴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설된 안 제26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제112조제2항”을 “법 제112조제2항”으로 하고 안 제26조제1항제2호나목 중 “제1목”을 “가목”으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조례안의 제정이나 개정 시 조례의 입법형식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88조 (세율)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86·12·31 법 3878, 89·6·16, 90·12·31, 93·6·11, 94·12·22, 97·8·30, 98·12·31, 2000·12·29 법6312>
1. 삭제 <89·6·16>
2. 건축물
(1) - (4) (생략)
3. 선박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50
(2) 제1목 이외의 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3
4. - 5(생략)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의견
2. 선박	2. (개정안과 같음)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 선박 : 그 가액의 100분의 50	가. 법 제112조제2항 -----
나. 제1목 이외의 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3	나. 가목 -----

안 제26조의2, 안 제38조 및 안 제49조제2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제187조, 제234조의17 및 제250조에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그리고 재산할에 대한 과세기준일 및 납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관련규정과 일치하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미비된 조문을 신설하기 위한 안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신설·개정될 조례조문과 관련된 지방세법은 이미 시행된 지 상당기간이 지난 뒤에서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 조례정비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과 같이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중전의 지방세법	현행 지방세법
제189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89·6·16]	제189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1·12·29]
	제234조의17 (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89·6·16]
제250조 (징수방법과 납기) ③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제250조 (징수방법과 납기) ③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2002·12·30 법6838>

안 제31조·안 제32조·안 제42조제7항 및 안 제50조제2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들 개정안은 부동산 취득으로 취득세·등록세 신고납부 시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원으로 등재함으로써 과세자료 중복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31조의2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지방세법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선박에 대한 신고의무 조항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조항과 동일하게 선박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 제36조제1항은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